

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3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폐지이유

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이에 따른 「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관련 업무가 道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」의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「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.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제9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(이하 "건축주"라 한다)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·조각·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5.25>

② ~ ③ 생략

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5.25>

[제목개정 2011.5.25]

□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

제13조(미술작품의 설치 절차·방법)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·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25>

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·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1.11.25>

③ 시·도지사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·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11.25>

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1.11.25>

[제목개정 2011.11.25]

제14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) ① 시·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·평가를 위하여 미술·건축·환경·공간디자인·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. <개정 2011.11.25>

② ~ ③ 생략

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1.11.25>

[제목개정 2011.11.25]

□ 「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

제29조(미술작품의 설치절차) <개정'12.7.12> ①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,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(이하 “미술작품”이라 한다)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'12.7.12>

1. ~ 4. <삭제 '03.1.6>

② 영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(이하 “건축주”라 한다)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착공신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영 제13조의2제1항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계획서를 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'12.7.12>

③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·평가를 위하여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'12.7.12>

④ 도지사는 감정·평가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고,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'12.7.12>

제30조(미술작품의 설치 확인과 사후관리) <신설 '12.7.12> ① 도지사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·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'12.7.12>

② 도지사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, 설치된 미술 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'12.7.12>